

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개월
신청기관	기관명			
	대표자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소재지			
	전화번호			
	설립 근거			
	설립 목적			
	설립 연월일		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

(전화번호: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. 사업계획서 3. 시설명세서 4.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. 인증업무 규정	수수료 없음
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